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44
----------	-------

발의연월일 : 2018. 4. 30.

발의자 : 강훈식 · 이수혁 · 안호영

송기현 · 이원욱 · 손혜원

윤관석 · 김경협 · 임종성

윤후덕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행료 인하효과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보다 커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검토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선투자의 주체를 민간자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할 경우 수납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통합채산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
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
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 제4항).

주요내용

- 가. 도로관리청은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권을 설
정하고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정 통행료보다 낮은 통행
료를 받은 경우 손실보전을 위해 그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안 제16조제3항 신설).
- 다. 통행료 총액의 한계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외에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산 금액
을 추가함(안 제16조제4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개설된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민간자본 이외에 당해 도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당해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산한 금액을”로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행료 수납기간 동안 적정 통행료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은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그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도로관리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개설된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민간자본 이외에 당해 도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회수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당해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6조(유료도로관리 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p>	<p>제16조(유료도로관리 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유료도로관리 청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행료 수납기간 동안 적정 통행료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은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그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p>

<p>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 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 墳)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 보전준비금을 <u>포함한다</u>]을 초 과할 수 없다.</p> <p>④ (생 략)</p>	<p>----- ----- ----- ----- ----- ----- ----- ----- <u>포함한다</u>]과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적 목적 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산 한 금액을-----. 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